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1月 28日(火) 10時00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2次 監査活動)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가. 財 務 課 所管	_____	2면
나. 地 籍 課 所管	_____	19면
다. 社 會 課 所管	_____	26면
라. 環 境 保 護 課 所管	_____	37면

(10時00分 監査實施)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10時 01分)

○ 委員長 金鍾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선서, 본인은 평

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평창군 재무과장 권혁승

(재무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평창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실무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태영 부과계장입니다.

( 부과계장 인사 )

최호영 경리계장입니다.

( 경리계장 인사 )

이재도 정수계장입니다.

(정수계장 인사)

김완기 관재계장입니다.

(관재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관내 별장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에서 12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거주를 안해서 체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전체 213명이 납세무의자인데, 그중에 12명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2명은 건물 소유자가 틀림없는데 소재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이 12명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劉燾文 委員 : 그집에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 財務課長 權赫昇 : 비어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 정기에금에 과장님이 5%로 하는 이율 발생율을 우리 금고에 200억정도는 늘 군지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찾아서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해서 이율이 다릅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여 우리 군으로서 이자 발생을 더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 財務課長 權赫昇 : 그것은 제가 3개월 짜리 정기에금도 3구좌가 들어가 있고, 6개월짜리도 들어가 있고, 1년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4개월 이렇게 짝수로 나가는것은 없지만,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예치가 되는데,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02억원이 11개 구좌에 102억원입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현재 군금고 잔고를 80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50억내지 60억을 예치를 시켜도 가능한데,

연말이 되어 가니까, 지출소요 액수가 많아 지기 때문에 지금은 8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 80억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라도 지출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유효 자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저희는 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2억5,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나름대로 금고 운영을 잘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억5,000만원 목표중에서 3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여유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3개월 짜리라도 예치를 시킬 생각입니다.

○ 劉燾文 委員 :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뜻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5개월, 6개월로 계약 예치를 했다가 급히 쓸수 있는 일이 생겨 해약해도 그냥 놔 둔것에 비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히 관리 할려면 그금액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5개월 6개월씩 예치를 했다가 만약에 안쓰게 되면 이자소득이 되고, 쓰게되면 이자소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10억이나, 150억을 그냥 놔둘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율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소득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군지부에서 듣기는 늘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200억상당이 그냥 방치되어 군지부에서 5%로 계상 되면 10억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돈이 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이자소득을 못했다, 그래서 군지부에서는 그 10억이라는 돈은 5억원만 관리적 봉급이요 5억원 흑자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서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처음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셨는지 몰라도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한군데 놔둘것이 아니라 개월수를 생각해서 적립을 하면 이자 소득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 금고 관리를 제2금융권에서도 지금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자율금리 이자가 은행권에도 보도를 보면 자율금리입니다.

그래서 군지부하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지금까지 군유지 매각은 주로 일반개인이 계속해서 쓰고 있던 땅들을 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매각하는 방법은 사용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입찰은 금년도 회계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가 용도 폐지 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이 됨으로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3시에 이자리에서 입찰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대부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난번 평창에 민음상회에서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신지,

○ 財務課長 權赫昇 : 제가 그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창동리402-6번

지 지적 88㎡인데 공시지가 1만4,440원 이고, 감정가격이 1만1,440원, 매각가격이 1만2,056원 한 2천원정도 더받고 파는 경우 매각을 대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와 감정가격하고 거의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이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황계리 327 -1번지 임야 박재기씨는 공시지가 1만8천원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3만6천원입니다.

파는 것은 상당히 싸게 팔고, 사는것은 대체적으로 비싸게 파는데, 거의 곱배기 이상인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것이 전부다 건물이 기존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제가 현지를 안봤 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걸로, 그리고 감정가격대로 주로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에 의하다 보니까 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가격도 감정가격하고 동일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서 1천원이 프라스 생기는 정도 밖에 안되는데, 취득하는것은 전부 곱배기 이상 생기는데, 이 감정사가 잘못된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수 있겠끔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 가는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놓고 감정을 하는데, 어떤 땅은 파는 경우 공시지가와 거의 똑같고 사는 경우에는 곱배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제가 자료를 잘 몰라서,

○ 李慶鎭 委員 : 여기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를 보시면 취득한 부분의 도암면 황계리의 박재기씨, 공시지가 1만8천원인데, 감정가격이 3만6천원 아닙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李慶鎭 委員 : 이런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1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파는것은 1~2천원 차이로 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하 공무원이 아닌 우리 기관이 아닌 감정사가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어떻게 정당하게 했는가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는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절차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내땅을 가지고 내가 파는데 감정가격이 작든 많은간에 의문점도 제시 안하시고 금액만 정해지면 정해지는대로 파는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은 제가 꼭 명심 하여 참고를 하고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예, 부탁드립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평창경찰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재무과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두세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너무나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사실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앞으로 문제점이 라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찰서가 설계를 다 완료하고, 입찰이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3필지에 대한 토지부지가 해결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시기문제인데 사실 평창군이 경찰서 부지를 군비로 매입해주고, 현재 경찰서 부지와 교환한다 하는 것은 이쪽 부지를 9억 ~ 10억원에 4,400평을 매수를 해주고 현재 경찰서 부지 1,444평을 매수 했을 경우에 현재 경찰서 부지는 시가로 판단했을때, 주위의 공시지가로 판단했을때 약 22억 정도 되고 이쪽 투자는 약 10억정도 투자하면 12억 ~ 13억정도가 군청에 재산 가치를 올릴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이렇게 해서 한것인데, 경찰서에서는 교환을 내년 3월까지 교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부지 확보가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등기이전을 전부 완료한 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더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이후에 현재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지역이 굉장한 요지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탐을 낼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공공기관으로 봐서는 요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재무과 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평창경찰서 부지확보 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더 이상 큰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평창군 재정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네 알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그다음 별장세금 부과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별장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세가 일반부과에 비해서 5배를 더 부과합니다.

중토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습니다. 5배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1천원을 내면 5천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李洙現 委員 : 일반세금에 5배를 낸다는 말씀이죠?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그렇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법인세무조사는 매년 1회씩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법인이 우리 관내에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혹은 세무서에서 물론 국세에 대한 분야도 하지만 저희 군도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 金斗經 委員 : 관내 법인 소유 세무조사에 있어서 대상자가 약 95건인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36건 여기 실시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세무조사를 못한 것이 아니고, 기존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들어온 26개 법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규조사를 일제히 한겁니다.

기존 저희 관내에 체류한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현재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혹시 세무조사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한 평창군 관내 법인체가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보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전반적으로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스키장 오픈과 동시에 저희는 세

무조사를 일단 1차로 스키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 시설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연말 내지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이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누락된 그러니까, 비업무용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예를 들어서 차항에 목장을 구입한 덕산 개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법인등록상 사업이 콘도나 숙박업시설을 하는 업체인데, 목장을 사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해서 취득세 900만원을 증과를 하는등 3개 업체에 대해서 5억1,400만원을 증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이말씀을 왜 드렸나 하면,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광에서 취득해서 개인이 취득한 걸로 해서 세금 부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잘 입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앞으로 관례의 방지책

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金斗經 委員 :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세 총채납액이 12억2,100만원을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과년도 징수액이 12억2,100만원으로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12억 2,100만원중에서 10명이 9억9,200만원을 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인데, 이 10명에 대해서 전부 채권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다해 놓았는데, 이 10명의 9억 9,200만원중에서 한사람만 현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느 회사인가 하면 주식회사 논노인데, 은행관리까지 갔다가 또 제차 부도난 상태인데, 이런 업체의 고액 채납이 10명에 9억9,200만원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채납한

금액은 2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2억3,000만원은 제가 나름대로 받지만은 그중에 행방불명도 있고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받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간을 별도 정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국공유지 임대료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총 공유지 임대료 체납액이 대지분하고 농경지분을 따져 보면,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이 약 3,900만원,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데, 거의가 대지분입니다. 또 읍면별로 볼때 도암면이 많은 체납액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국공유지 대부분 체납액은 주로 도암, 진부 지역입니다. 사실은 국공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90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90년 11월 6일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뀐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 했습니다.

물론 제가 12월중에 개별적으로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횡계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115평을 임대하여 그곳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89년도에 21만7천원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6일자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게된 이후에 447만 9천원의 임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가 제도가,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지가는 토지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는 것이 있고, 실제 매매되는 시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다 틀립니다.

시가가 100이라면 공시지가는 70이 되고, 그다음 과세시가 표준액은 30~4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30원 하던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니까 70원이 되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므로서 황계지구의 지가상승을 감안하여 21만7천원 내던것이 449만7천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라는것이 자기 땅이 없어서 균유지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 사람들이 2년 ~3년 채납이 되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가 기 때문에 최대한 다 받아야 하는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개인별로 채납자 담당별로 조를 편성하여 전액 징수를 하고 이후에 정말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조금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강구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빈약한 평창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서라도 부과에만 그치지 말고,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적극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관내 대기업 지방세 납세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보광하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94. '95년도 대비표가 있는데, 쌍용양회가 약 1억5,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감액 원인은 어떤것이 있는지,

○ 財務課長 權赫昇 : 쌍용 같은 경우는 '95년도 세금이 아직까지 부과가 덜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납기가 12월 16일~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쌍용에 있는 자동차세는 전액 납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전액이 빠져 있고, 금년도 쌍용에서는 취득을 한 건물이라든가, 토지매입행위가 전혀 없었던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주된 원인이 이 두가지입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96년 도세 말  
고 군세만 보광과 쌍용의 예상액이 된다  
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 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순수한 군세만 했  
을 경우에 용평 쌍용은 12억4,700만원정  
도, 용평은 금년도와 수준이 비슷하고,  
보광은 '96년도 군세만 약 5억 6,000만  
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 禹康鎬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李相燾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5년 자동차 압류현황을 보니까, 압류  
차량이 249대, 그다음 압류한 회수 금액  
이 있는데, 이 자동차 체납액의 과도한  
행정처분등 체납 대책이 소홀 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향간의 여론은 자동차세를  
압류나 행정처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더 효율적인 주민의  
여론이 없는 행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비 산림과 풀베기 사업  
은 평창군 임업협동조합 박동락앞으로

1억3,1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해놓았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  
시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그 관계를, 법령이 있다면 유권 해석  
을 해주시고,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  
법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들  
니다.

정부에서 세법을 고칠때 자동차세 납기  
를 매 분기마다 하던것을 2분기로 나누  
서 3월 9월에 받겠다 하여 반년치를 자  
동차를 갖고 계신 모든분들은 3월달까지  
내셨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회를 내  
던 것을 금년도에 2회로 나누어서 내면  
서 금년도 3월 9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국민의 여론에 부딪치고  
저항에 부딪치니까 세법을 또 고쳐서  
6월말 12월말로 받겠다, 결국은 3월말에  
징수를 하고 12월말에 징수를 하는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자동차세를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를 아직 고지서도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세법을 자동차세 분양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께서 여러가지 혼동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잘못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각종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을 안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결과적으로 아예 무시하고 안내는 상습체납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이 체납처분을 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앞으로도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5호에 의하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산림조합에 1억3,100만원 짜리 풀베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이 제26조 1항 4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조 이런곳은 경지정리도 농조에 수의계약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시간이 나는대로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관계 법령에 대

한 사본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있습니다.

○ 李相燾 委員 : 부탁드립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풀베기 사업으로만 1억3,100만원이고, 8월 8일 동시에 수의계약 금액이 2억2,650만원이거든요?

천연림 보육사업에서, 임협 말고 다른쪽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었는지요?

이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임협이라야 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임업 경영에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임협에서 거의 100%,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임도를 포함해서 풀베기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해서 전부다 임협이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는 임협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이후에는 거의 100%

임협이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쪽이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당연히 임협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임협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계획대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국비보조비 지역개발비가 다른 실적율에 비해서 약 10%, '95년도는 지역개발비가 다른 실적율에 비해서 70%를 상회 하는데, 지역개발비만 39%, 도비보조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가 사실 다른 실적율은 거의 90%를 상회하는데, 34%, 35%로 그치고 있는데, 다른 보조비, 다른 행정비나, 무슨 지원비에 비해서 유독히 실적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이것은 도의 관련 부서의 자금사정, 이런것이 기획관리실 이라든가, 실무과의 자금사정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꼭 뭐라고 확실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 실적율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거의 90% 아니면, 4~50%씩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특히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비는 140%정도 실적율인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는 34%,35%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국유재산 임대 기간이 지금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5년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작년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2~ 5년의 필요성 있다고 하여, 작년부터 5년 하는겁니까? 언제 부터 5년입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저희 공유재산 관

리 조례가 과거 2년에서 90년이후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예,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그문제가 5년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균유지의 하천이나, 임야라든가, 구거에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약할때 마다 지역개발공채를 사야 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중이라도 꼭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볼수 있는데, 지금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하기는 하셨습니까?

몇번이나,

○ 財務課長 權赫昇 : 건의를 못한것 같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균유지에 집 짓고, 농사를 짓고 하는 , 그문제를 별다르게 챙겨주시기 바



라고요,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용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시무목의 옛날 송재운 씨가 지은 4가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 財務課長 權赫昇 :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것은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 제가 본질문을 또 한번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공유지 계약분 611필지에 계약누락된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왜 누락이 되었는가, 또한 공유지도 468필지외에 계약이 안되고 누락되었으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보고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은 전체가 2,849필지에서서 잡종재산 1,403필지인데, 1,403필지중에서 대부계약이 된것이 611필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말씀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계약이 지금 안되어 있는것을 숫자상으로 봤을때, 792필지가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이중에는 대부를 해줄수 없는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수 있고, 무단점유 한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역시 국유재산도 계약이 안된것이 573필지도 사실상 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봤을때, 이것도 도로 하천에 들어갈수도 있고, 계약이 안되고, 무단점유해서 누가 농지로 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 측량을 하고,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도 했고, 측량비도 계상을 했고, 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단 점유된 것이 몇 필지라고 조사한것이 없습니다.

조사를 내년도에 일년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일체조사를 하면서 측량까지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

입니다.

조사를 해야지 확실하게 밝혀 지겠다  
이런 말씀이죠?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劉燾文 委員 :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  
이 안된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고도 안하고 사용하는 것은  
밝혀서 분명히 계약이 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 劉燾文 委員 :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재무담당관하고, 평창군 재무과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경찰서를 통해서  
서만 연락을 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경찰청의 재무담당관  
은 경찰관이 아닌 전문성 민간인 이랍니  
다.

지금 우리평창군으로서는 그사람하고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평창  
경찰서하고 백번얘기해도 소용 없어요.  
재무관 얘기는 여론에 들으면, 우리는

평창경찰서를 짓겠다고 예산을 내려 보  
냈지, 부지를 사겠다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재무담당관으로서는 불가능한걸로 본위  
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평창군 집  
행부의 예산낭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  
리라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이  
것을 해결하고, 경찰서 건물이 해결되어  
야지 만해 하나 그냥한다면 필연코 평창  
군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나타난 자료로 얼마든지 여론화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우리군  
으로 신중히 생각하여 주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집행부 예산 다루는데, 문제가  
야기 되면 그때 당시에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가지만 당부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상 종료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입찰을 보는 시간이 몇시에 됩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오후 2시에 주로 봅니다.

○ 李慶鎭 委員 : 2 ~3시인데, 지금 내년도 부터는 군수께서도 수의계약을 평창군 관내 업체에 전부 할 수 있겠끔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에는 전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입찰을 한번 보러 오면, 50 ~100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큰것을 하면 100~200명 옵니다.

○ 李慶鎭 委員 : 100~ 200명이 오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시간을 1시에 한다면 100~ 200명이 최하 평창에 와서 점심을 먹을 수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 3시에 하므로 영월인 사람은 자기집에서 밥먹고 차를 타고 와도 충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입찰시간을 1시쯤 조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11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 20分 監査中止)

(11時 41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  
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선서 , 본인은 평  
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  
탤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지적과장 남대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인사)

지적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인사)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인사 )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지적과장 자리에 앉  
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지적과에서는 대한지적공사  
평창출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 감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아직도 지적공사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과거의 나쁜습관이 아직도 관례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측량날짜를 두번 세번씩 연기를 한다든지, 또는 한달, 두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민원인 위에 굴림하는 지적공사가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9월말까지는 3개조가 운영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10월 이후 인원이 충원되어 5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후로

는 민원 신속처리 및 친절을 생활화 하여 군민들로 부터 신뢰 지적인이 되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지적공사 직원이 몇명인데, 몇명이 늘어 났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4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앞으로 한달 두달씩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이문제를 말이죠 앞으로는 수시로 지적공사 심지어는 심한 말씀같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교양문제까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민원인들이 지적공사를 출입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개발부담금 부과 정수 내역인데요.

지금 근린생활시설 휘닉스프라자 하고

금강기업 공업부지조성 최한규씨로 되어 있는데,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일까지가 납기입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휘닉스프라자는 '96년 5월 8일이고, 금강기업 공업부지조성은 '96년 5월 24일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부과는 했는데, 정수할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

○ 地籍課長 南大鉉 :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아리랑장 김양환, 연립주택 유덕연은 어디겠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용평면 속사리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초원파크 말하는건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맞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 아리랑장하고, 연립주택, 평창 참식품 부과 예상금액이 얼마씩 각각 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96년도 개발지가 확정되어야 계산이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개별지가 확정후에 결정되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 禹康鎬 委員 : 약 얼마정도 되는지는

○ 地籍課長 南大鉉 :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계산정도는 해보고 오시지 그랬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아직 지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禹康鎬 委員 : 특별조치법 대상필지 및 실적 현황인데, 확인서 반려가 117건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유가 어떤것입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착오 신청 및 이의 신청분, 중복등기 및 미등기 토지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중복등기요?

○ 地籍課長 南大鉉 : 이중 등기난것을 중복 등기라고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민원인이 모르고 등기 신청을.....,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그렇습니다.

등기과정에서 반려 된 사항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정진 위원입니다.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산정하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시점은 준공검사 일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준공검사가 끝나면,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이 얼마라고 안내 통지를 하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안내 통지를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물은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6건을 징수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과태료 물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행정예고 차원에서 언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통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地籍課長 南大鉉 : 개별 통지는 계속 하며,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보고로 해 드리겠습니다.

(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李慶鎭 委員 : 예 부탁드립니다.

○ 金斗經 委員 : 중개인 유효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신고기간, 그러니까 허가기간, 할수 있는 기간?

○ 地籍課長 南大鉉 : 중개인 기간은 중개인 허가가 나면 본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 金斗經 委員 : 무허가 중개인이 중개업 행위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고발로 끝났으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 禹康鎬 委員 : 과다 징수건은 어느정

도 처벌 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아직까지 한건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관리감독을 잘 안하셨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지금 고시되어 있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서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양쪽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앞으로 돈많은 분들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할때는 지역에도움이 되겠지만, 없는 사람이 팔고 살때는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에 보면 평창읍 도시계획지

역내 녹지지역은 660㎡이상은 신고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면을 띠어 보면 500평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500평은 준농림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법이 섹쪽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례해서 평소 많은 쪽으로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1,000평중에서 300평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분할을 하여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할은 가능합니다.

선분할이 되어 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반대일때는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분할이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분할이 안되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것은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적공사 현황측량이 수반되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하는 관계를 보면 측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측량기사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그렇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 주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측량 과실일 경우는 측량자 자신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한테 정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 李慶鎭 委員 : 상당히 중요 한것인데

측량기사가 경계측량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억 공사를 했는데, 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여기에 보면 800만원 범위내에서 기사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주는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지적공사에서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다음 사유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측량기사 한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건축주가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누구한테도 보상받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좀 관찰해 주셔서 그법이 그 공사에서 책임질수 있겠끔, 기사들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적도를 떠면 수입인지를 300원, 500원, 1,000짜리를 붙이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붙이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지적등본 같은경우는 가로 17cm, 세로 20cm 1매에 500원을 정수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 필지를 떼기 위해서 도각선이 걸려서 두필지를 떼어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두매를 복사한후 규척크기대로 제단해서 500원을 정수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두장을 붙여서 1,000원씩 받았 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은데, 제가 몇번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두장을 복사하면 복사지값 두장을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는것인데, 두장을

떼어서 붙여서 자로 잘라서 500원씩 받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 16分 監査中止)

(13時 34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관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사회과장 김영주  
(사회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호 사회계장입니다.

(사회계장 인사 )

최진순 위생계장 입니다.

(위생계장 인사 )

고재용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인사)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사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시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죠?

○ 社會課長 金榮柱 : 시간조정은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강원도 전체에 대한 영업 시간 조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유흥업소의 시간을 2시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그사항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있습니다. 한달전에 도에서 부터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회의가 있을때, 각 시군 부군수님이 직접 와서 영업시간연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여 저희들은 각 읍면, 기관단체에 여러가지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은 관광지구, 여러가지 특색이 있기 때문에 2시간정도를 연장하였으면 좋겠다고 집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주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쪽에서는 2시간정도 연장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많은 의견 쪽으로 저희들이 2시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일단은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건의한 결과는 모르시겠네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도에서 여러가지 보도내용을 보니까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는 연장하는것을 반대하고 있고, 도에서는 완전 해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도에서 그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저소득장애아동 특수학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년에 한번 지급되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59만3천원 말입니까?

○ 李洙現 委員 : 아니, 저소득장애아동 특수학교 학비지원 현황해서 1인당 54만원씩 108만원씩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17페이지 입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이것은 저소득 자녀중 정신지체장애자인데,

2명이 춘천 계성학교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명단 1인당 54만원으로 1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한꺼번에 지급이 된것입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李洙現 委員 : 54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에 근거하여 지급을 한것입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학교 수업료 전체를 통보 받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단체자율지도실시중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자율지도실시 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지금 저희들이 단체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조합에서 하는데, 자율지도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것을 애기 합니다.

현황에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위생계 직원은 3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정선이나 영월에는 4명씩 정규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명이고, 업소수는 정선, 영월보다도 오히려 배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분히 조합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부장도 바뀌면서 열의를 가지고 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자율지도를 함으로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런 단체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뜻으로 자율지도가 되기 때문에, 지부에서 서도 자율지도를 해주는것이 행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자율지도 뜻이 좋은데 사실상 그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위생검사를 할때, 저희들 눈에 보이기도,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해서 잘 이루어 지는것 같은데, 사실 자율지도 하고

부터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보기가 힘들  
어요.

그래서 자율지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뒷따라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저도 위원님 말씀  
대로 뒤에서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  
무보고를 하신 내용중에서 심야및 퇴폐  
변태 영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7개소,  
고발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심야및 퇴폐, 변태영업을 한 것인지,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영업시간 위반이  
2건, 불법프로그램으로 영업 정지,  
명의 변경 미필 시정으로 행정처분이 되  
고, 무허가로 우리가 영업을 한것이 있  
어서 변태로 하여 고발한것이 3건 있습  
니다.

○ 李洙現 委員 :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  
게,

○ 社會課長 金榮柱 : 제가 서면으로 답  
변드리겠는데, 영업시간 위반, 불법프로  
그램 2건, 명의변경 미필, 그리고 무허  
가 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李洙現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전에는 다방이라고 했  
는데, 이제는 휴게음식점으로 바뀌었는  
데, 지금도 아직까지 T·O 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요즘은 다방 휴게음식점이 더  
이상 신규로 나지 않는 폐단 때문에 업  
주들이 권리금으로 허가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개정할 뜻은 없는지요?

○ 社會課長 金榮柱 : 그것은 국가시책  
으로 요즘은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정수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신규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 劉燾文 委員 : 군수 허가인데도 그렇  
게 되어 있어요.

○ 社會課長 金榮柱 : 네,

○ 劉燾文 委員 : 지금 지방화 시대에  
군수 허가로 되어 있는것도 그렇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유흥음식점이 원래 보건복지부장관 허가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재임하는 허가사항입니다.

군수가 그것을 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 劉燾文 委員 : 군지역만 그런지요? 시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시지역은 안 그런줄 아는데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시지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劉燾文 委員 : 또 한가지는 장애인 신고를 본인들이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 社會課長 金榮柱 : 본인들이 직접합니다.

신고할 하게 되면 신고하는 비용도 다드립니다.

○ 劉燾文 委員 : 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

으러 다닌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진단비를 전부다 주고, 읍면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읍면장은 의료기관에 검진의를뢰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검진내용을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다 우리가 주면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을 해 줍니다.

○ 劉燾文 委員 :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허리를 못 쓰는 학생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장애인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이니까, 구태여 진단서를 안붙여도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는냐는 겁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치료 한것으로 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劉燉文 委員 : 또 한가지는 만약에 공사판이나 광산 지하통로에서 근무하다가 다쳤습니다.

2급이나 3급을 받은 장애자가 되었을때,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劉燉文 委員 :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회복지비가 99% 실적율을 가지고 미수령액이 732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가 99%실적율을 가지고 287만9천원이 미수령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95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국비 예산액이 11억1,157만6천인데, 수령액은 8억2,368만2천원입니다.

미수령액이 2억8,789만4천원인데, 실적률을 보면 74%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 26%인 금액이 무려 2억8,789만4천원이 됩니다.

도비 예산액이 4억2,290만2천원, 수령액이 1억4,243만2,760원에서 미수령액이 2억8,450만9,240원입니다.

34%정도가 실적율로 올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것인지,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복지비 중에 사회과 소관은 대부분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 하는 돈이고, 저소득 주민학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 제가복지비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우리 사회과 소관에 대한 것은 다 내려 왔습니다.

다른 과인 가정복지과도 있고, 환경과, 사회복지비속에 여러과가 해당되지만, 그래도 사회과 비용은 다 와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제때 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회복지비이기 때문에 사회과가 자장 많은 비중인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진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현황,

○ 社會課長 金榮柱 : 청소년 보호관계



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전체 다요?

○ 社會課長 金榮柱 : 네, 사회과에서 안합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책정 기준 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9만원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2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재산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합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자료에도 있습니다. 다만 거택보호대상자의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다만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 심신장애자는 1,2,3,4급의 장애를 원칙으로 하고,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자를 거택보호

자로 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로서의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 해당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생활보호대상자 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소득및 재산 기준은 거택보호 19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요금평가를 읍면에서 평가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관계는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실질로 19만원 이하가 될지는 사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나 것은 뚜렷이 법정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별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자활보호대상자 소득

이 20만원 이하, 재산 2,500만원이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활보호 대상자를 강원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낸 것을 보면 '94년도에 영월군에 1,050 가구입니다.

평창군 409가구, 정선군 868가구인데, 인구로 보나, 필요로 보나, 영월의 반밖에 가구가 선정 되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사 기준을 너무 강화 시켜서, 너무 엄격하게 조사한 부분이 혹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때는 정책적으로 영월하고, 정선은 폐광이 되기 때문에, 광산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니까,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폐광된 근로자들을 책정하느라고 정책적으로 고려 한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계속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매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어떤문제가 있나 하면 연쇄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되는게, 취로사업을 자활보호대상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李慶鎭 委員 :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영월군은 1억1,938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평창군은 6,100만원, 정선군은 1억4,500만원, 하나가 어정적하게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돈이 몇억씩 손해보는 문제가 있는데, 취로사업만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취로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세농가 194세대가 참석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890세대인데, 이 기준을 선정 하실때 완화시켜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이 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 그부분은 언제쯤 내려

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94년도를 보게 되면 각시군에 취로사업비 도비를 깎아서 태백이나, 정선, 영월에 더 많이 주었습니다.

사실 도비가 많지 않은데, 저희들도 취로사업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평창군도 도비가 많지 않은데, 도비를 주면서도에서 팽팽하게 주는데, '94년도 또한 태백, 정선, 영월이 어렵기 때문에 각시군 사업비를 도에서 삭감하여 그지역으로 고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월, 정선, 태백이 가장 많지 않으나 생각이 듭니다.

○ 李慶鎭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및 생활안정기금대여 현황으로 세분이 나와 있는데, 대화, 진부, 용전에 800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대여 할때 복잡한 서류가 많이 들어 갑니까? 대여 조건이 어렵게, 실지 어려운 사람이 대여 받기 힘들 정도로 어느정도 조

건이 되어야 대여 해 줄수 있는지?

○ 社會課長 金榮柱 : 현재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가구당 400만원, 4,000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 30만원이하, 대여 제한은 자활보호 대상자 이상중에서 하게 되는데, 1인당 800만원정도 하게 됩니다.

가구당 보통 4,000만원 이하가 되니까 웬만한 기준은 사실 받을수 있지 않느냐 별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禹康鎬 委員 : 장애인이 평창군에 한 1,000명정도 되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3명밖에 받을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들어 오는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신청 절차나, 뭐 그런 건 까다로운것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없습니다.

저소득 관계나, 장애인 관계는 가장 간편하고 쉽게, 사실 저소득특별회계관계

는 생활안정기금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주 못사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동안에는 이자도 안받고, 상환할 기간에만 5%만 받기 때문에 그냥 도와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800만원을 대출 받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정도 되어야 하고, 500만원을 대출 받을 때에는 본인 소유예산액이 얼마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

○ 社會課長 金榮柱 : 가구당 4,000만원 이하입니다.

○ 禹康鎬 委員 : 4,000만원 이하이면 4,0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0만원 대출을 받을텐데, 4,0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4,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잘사는 편이 되고, 4,000만원 이하 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준다는 뜻입니다.

○ 禹康鎬 委員 : 4,000만원이 많은 돈인데,

○ 社會課長 金榮柱 :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은 연리 6%가 되고 해서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보조금인데요 복지분관에 210만원을 한번 지급을 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한번 지급했습니다.

물리치료장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딱 한번 주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200만원은 작년 장애인날 행사할때 복지분관 하고 장애인군 지부에 200만원 하셨는데, 장애자의날 행사할때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걸로 알고 계세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참여 인원이 250명~ 30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민속체육대회를 통하여 장애극복의지 제고및 장애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여러가지 행사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의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이라고 하면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4,000만원도 타의든 자의든 편안한 말씀올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 행사때 빠짐없이 참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알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자의날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는 많은것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 있으면서 사회단체 지원금도 많이 해 봤지만, 사실 소홀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禹康鎬 委員 :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분관에서는 실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 협회도 사단법인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식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나누면, 한 단체, 한분관에 100만씩 에 안준것인데, 다른곳은 아무것도 안해도 분기별로 매년 돈을 척척 내주는데요. 이런 것을 잘좀 챙겨서 많이

내주시면, 많이 내준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감사 받을, 지적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委員長 金鍾永 : 보충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증지를 한후 2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4時 18分 監査中止)

(14時 4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監査委員 禹康鎬 氏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인사)

폐기물관리계장 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배정 인원 현황을 보니까, 대화와 진부가 정원이 7명인데, 현재원이 6명씩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족한 이유가 뭘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평창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진부면과 도암면, 대화면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런데 대화 현황표를 보면 대화와 진부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행정사 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화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진부는 아직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횡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자료 수치가 틀렸네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바뀐 사항입니다.

○ 李洙現 委員 : 대화도 그렇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대화면이 현재 7명,

○ 李洙現 委員 : 자료를 제출한후에 채용을 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洙現 委員 : 다음에 대화면 쓰레기 소각로 예산 집행 내역중에 마지막에 '95년 11월15일 현재 유류사용량 1,700 ℓ, 42만1,600만원을 예산 미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미집행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이예산은 저희가 11월 중에 200만원을 소각경비로 배정을 했는데, 대화면에서 아직 동절기 마지막 유류 사용료까지 모아서 대금을 지급하게 위해서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대화 쓰레기 소각로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은 날씨

가 출기 때문에 물을 댄 상태에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가동중지 했다는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洙現 委員 : 연료대는 충분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연료대는 집행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료대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요.

연료대는 처음에 생각 했던것 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크게 허가, 신고, 신청 이세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10조 설치신고, 제11조 준공검사,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가 민원처리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읍면에 권한 위임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읍면에 접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서 읍면 경유해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는데,

개선된 내용을 보면 읍면 접수및 처리, 바로 민원인 통보,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일부터 살수식 정화조 설치가 금지되고 폭기식 정화조 설치만 인정되고 있죠?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洙現 委員 : 그러므로 인해서 이성과 같이 신고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설치 신고 민원이 개선되어 편리하나 허가 신고에 제외 건축물, 다시 말해서 신청에 의한 건축물은 아마 전체 건축물의 7~80%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개월 이상 1년이상 입주하여 사용하다가 건축주가 필요시에 건축물 필요시에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을 하게 되는데, '96년 상반기까지는 금지된 살수식 정화조를 설치 사용하다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규정에 살수식 정화조를 폭기식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접수 없으며, 따라서 주민들이 살수식을 폭기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물론 인력까지 낭비하게 되며, 주민과 행정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본위원회는 살수식 정화조를 설치 신고제외 건축물에 대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서 일정기간 신고 내지는 준공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신고대상 건축물에 기 설치된 살수식 정화조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래서 제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미 살수식 정화조를 사용하고, 준공검사를 맞지 못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읍면사무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폭기식이 아니면 준공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전혀 준공검사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지 일선 읍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쉽게 처리를 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유예기간을 어느정도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하여튼 검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오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는 농촌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이 봉평, 진부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도비 지원이 만약에 관철이 안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당초에 저희 군에 1개소 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진부에서 오대천 상수원문제가 심각하여 그곳에 설치하고, 한군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여져 봉평에 설치하는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비 예산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추세라든가 발전을 감안하여 '96년에는 오수처리장이 꼭 시설 되도록 계획이 있는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金斗經 委員 : 행락철 쓰레기투기 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단속 결과가 계도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도내용은 대충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계도 19건은 저희들이 오대산국립공원과 산림내 등산로라든지 산지정화보호지역, 비지정관광지, 산간계곡을 대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19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리고 군민정서가 이제는 피서객들이 산간계곡으로 모여드는 향상이고, 산 좋고, 물 좋은 우리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군민이 참여하여 감시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중관리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지정관광지에도 일단 계도로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인 예산이 뒷따르겠지만,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여 또한 그안에 들어 가면 취사 할 수 있는 장소, 주차시설, 쓰레

기장등을 선정하여 계도를 철저히 하고 행정규제를 더 강화하여 법규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물맑고, 산좋은 강원도 지키기 운동이라는 사업을 최각규 도지사님이 부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참가를 했는데,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지역에 행락객들이 하천, 계곡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는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하천오염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깊은 산속,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해서, 행정 관청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

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는것과, 이것을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하여 민간단체, 범환경단체, 자연보호단체등 각종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우리의 강원도 땅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도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준해서 군 협의회도 구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이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담배꽂초를 버리면 2만5천원 쓰레기를 버리면 3만원, 이렇게 버리는데 따라서 규제하는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자 하여 지금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과태료 문제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은 방법으로 평창군 푸른산, 맑은물 지키기 평창군 협

의회를 결성하여 군내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참여하여 신고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 구체화 되는 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창지역에 쓰레기 투기,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의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함부로 버리는 것을 자제 해야 될 줄 압니다.

○ 金斗經 委員 :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증원 배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봉평에 욕심을 가지고 배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봉평면 도읍정비 및 보광개발로 인하여 레저산업으로 인한 인구조사를 한결과 1,40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봉평면의 각종

생활오수 폐기 쓰레기 물량이 대량으로 많이 배출될 추세인데, 이러한 모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사실상 시급히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아직까지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봉평, 용평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이 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증원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과장님 제 생각같아서 '96년 당초예산에 증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다음에 봉평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끝나면 명년 1월

달 부터는 당장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특히 보광이 같이 갖다 붓다가 12월 중으로 오픈이 되면 앞으로 많은 쓰레기량이 배출되는데, 이를 버릴 장소에 대한 대책은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고, 주민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를 행정기관에만 맡겨 놓는다면 쓰레기 처리는 근본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주민, 읍면, 우리군 모두 나서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온지 3개월정도 됩니다마는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봉평 지역 여러곳을 누비면서 할려고 하니, 주민들의 여러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창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그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봉평면과 다시 검토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임시 매립장이라도 확보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주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진부, 동해간 확포장사업, 산업도로 말씀하시는거죠,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월달에 진부와 도암 면에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안 주민의견수렴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할때 노선을 두개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임계에서 왕산을 거쳐서, 즉 강릉 왕산면을 거쳐서 횡계로 들어와서 진부로 오는 노선이고,

또 하나는 진부 신기리 봉산쪽으로 올라와서 상진부로 연결하는 2개노선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할때 설명하기를 1안으로 하겠다, 다시말하면, 동해에서 임계를 거쳐서 횡계로 해서 진부로 내려오는 노선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진부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것 같다, 신기리 봉산쪽으로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니,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결정권이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노선을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내준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제시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암쪽의 사람은 그쪽에서 오는 노선을 구태여 고속도로와 국도가 겹치는 길을 이용하여 진부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영동고속도로에 연결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주민에 미치는 환경영향도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유천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출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유천에 주민들이 유천을 통과 않기를 바라는 이유중에 가장 첫번째 이유는 특별한 소음공해도 있지만 고속도로와 국도가 양쪽으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禹康鎬 委員 : 정선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신기 봉산으로 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그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실지 환경영향평가라는 차원이 아니고 용역회사 발주를 받은 회사에서 주입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1안, 횡계쪽으로 올라오는 안을 주입 시키라는 식으로 반발이 많았었는데, 그날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한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미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점에 발생신고사업장 60개소라고 하셨는데, 행정처분실적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대표 사업장들 실태가 어떤 사업장들입니까?

○ 委員長 金鍾永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한후 3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 26分 監査中止)

(15時 51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다 중지한 우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점에서 12개소 주업장 실태를 제가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레미콘 차량들 현장에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레미콘회사 현장에서의 세차 문제점, 그다음 단속 상태, 그리고 각 작업장의 세륜시설들 설치 여부, 사실 세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들이 바로 도로로 들어와서 도로에 흙, 먼지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발생 시키는데, 이런 점검 여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먼저 처음 질의 하신 비산먼지사업장 행정처분된 내용중에서 고발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95년 5월 11일 삼양진흥 용평면 속사리 692-3.4번지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최창순이고, 비산먼지발생업체 시설을 위반으로 하여 고발되었습니다. 그다음 '95년 5월 20일 삭강, 봉평면 무이리 991 -1번지 삼강주식회사인데, 레미콘 제조 업체입니다.

염기영씨인데, 비산먼지역제시설 미설치로 하여 고발한적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이 두개 업체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이것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되었으니까,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 된 것이죠.

○ 禹康鎬 委員 : 나중에 12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禹康鎬 委員 : 그리고 레미콘 차량 세차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종전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구역에서 세차를 할때는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94년 초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중 일부개정으로 하천에서 세차를 할때만 단속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변등지에서 세차를 해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생겼습니다.

다만 도로변등에서 목격되면 금지하도록 계도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 일반 세차가 아니고 시멘트가 믹서된 세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그런 회사별로 그러지 않도록 지시를 하시던가, 아니면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챙겨 주시고,

각 작업장 세륜 시설 설치 여부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아납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세륜 시설을 해야죠.

○ 禹康鎬 委員 :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바퀴 밑에 흙이 달라 붙어서 길에, 현재 평창읍에도 들어 오는 도로 입구에도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는것을 다 봤는데, 그런것은?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저도 저희관 내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보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곤 합니다마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모두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각종 민원사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때마다 즉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충분히 단속을 하기에는 인원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에도 이런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다른분들이 볼때에는 더 하겠죠, 사실,

○ 禹康鎬 委員 :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면 세륜시설을 확실하게 갖출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주시는것이 원안일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서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통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데, 그 흙이 갈때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로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 문제인데요.

읍면별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읍면별 통계별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禹康鎬 委員 : 그것에 비해서 실제 환경미화원의 인원 배정 상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저희들이 모두 48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평창읍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대화, 진부, 도암이 7명으로 같습니다.

나머지 4개면이 3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평창에는 쓰레기 수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업체가 관내 있는데, 평창에는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모두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진부나, 도암 같은 곳에서는 위탁처리하는 것이 561세대, 진부같은 경우는 477세대가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적습니다.

○ 禹康鎬 委員 : 477세대 구분이 대형 아파트 두동이면 되거든요.

그것과 환경미화원 업무량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평창은 각종 군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는 환경미화원이 조금 더 필요한것 같고요.

○ 禹康鎬 委員 : 조금 필요한데 배인원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제가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인원이 조금 늘어 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평창읍에는 자동차 한대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인데 차 한대에 인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지역에 재활용품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노성산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그지역만 청소하는 직원이 별

도로 배치되어 있어 이런 문제로 해서 보니까,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  
다. 라는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물론 사람이 있으면 놀지 않고 일을 하  
겠죠, 앞으로의 문제는 현재 있는 인원  
을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고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이 안맞으니까  
내일부터 누구, 누구는 그만두시요. 이  
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자연 감원되면 다시 채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인원을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진부나 도암쪽에서  
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다시 생긴다  
든지, 아니면 오수처리장이 새로 생긴다  
면 그 인원이 늘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인원을 늘려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겠습니다.

특히 어느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  
량이 많고, 어떤쪽에선 업무량이 적고  
하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시간을두고 해  
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균형이 안맞는듯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지금당장의 문제가 아  
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년도것  
도 봤지만 인원을 이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평창읍이 13명인데, 평창읍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15명입니다.  
군청 2명 포함해서, 그럼 가장 큰면 진  
부, 그다음면 같은 경우에도 7명입니다.  
지금 진부는 1명이 결원이라서 6명이  
지만 김종래씨가 그만두고 다른분이 아직  
까지 채용이 안되어서 6명이 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저도 일찍 일어나서 아저씨들 업무량을  
보면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평창에 아무리 노성산이 따로 있고, 체  
육관이 있고, 군단위 행사가 많고 그래  
도 진부나 도암쪽보다는 적게 나올것입  
니다.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읍이기 때문에  
13명을 의무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이기 때문에 7명,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과장님이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군

수님과 상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인원 배정을  
위해서 '9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참고하실 사항이 아니고, 직접  
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인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린적이 있고, 강원일보 토론회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설치 및 준공인데요.  
신고로 하는것은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준공검사를 받는것은 한개 용량, 기준  
용량을 초과 하는것을 준공해 줄 거 아  
닙니까?

신고와 준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준공은 신고  
규모와 허가 규모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0  
인 이하의 정화조를 묻을때 기성 제품을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규  
모까지 일일이 군청까지 나와서 신고를  
하든가, 읍면을 경유해서 신고하면 시간  
이 많이 걸리니까, 누구나 눈으로 상식  
적으로 설치한것만 확인이 되면 준공처  
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간소화한 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30인 미만만 그렇게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그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그 이  
하 기성제품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평창연립 같은  
경우는 몇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평창연립 같  
은 경우 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파이프를 다 연결해서,  
그곳의 준공검사는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해야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 오대천 상수원 수질오염 대책에 대

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간평2리 구석드리 연립은 오수정화 시설입니까? 아니면 정화조 시설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정화조 시설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지금 80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BOD 50%이상 방류수 계획, 그리고 법기준도 50%이상 설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박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는 파이프를 상수원 있는 곳까지 내기로 했다라고 몇일전에도 들었고, 제가 오늘 장사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이상 제거를 해서 상수원으로 방류를 했을때의 문제점?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이것은 하루 지역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있고, 생활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지계장님한테 듣기도 제거식으로 하기로 들었는데, 이지역 주민들하고 건물지은 사람하고, 합의를 그렇게 봤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후로 그런일이 없도록, 상수원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면, 평창연립, 오대산 관광호텔, 특히, 평창연립같은 문제도 준공검사 할때 반드시 완벽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부터 월정사를 포함한 모든 오대천 위에 있는 오염물을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원 같은 경우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지만, 가족호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가동 설치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차례 부도에 걸쳐서 이대호씨가 유치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대로 공사

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난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잘 고쳐서 오대산관광호텔도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다시 상수원 집수장 탱크있는 밑에 까지 5.7km를 매설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불만은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네 한테만 유독 그것을 적용한다. 조금전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지저분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劉燾文 委員: 유돈문 위원입니다. 군내 오수처리장이 5곳이 있는데, 24시간 가동이 되는지, 또 점검은 1개월에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가동은 정상으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주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탄 같은 곳은 보관 창고가 없어서 주민이 재활용품

을 선별해 놓은 것을 면사무소에서 빨리 가지고 가지 않아서 오히려 거리에 버려지고, 면에서 가지고 간들 보관 창고가 없어서 그냥 강변에 두어서 비오는날에는 박스 같은것은 젖고, 앞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오게 되면 주민이 재활용품 분리를 해 두었는데, 보관창고에 보관을 못하고 강변에 놔 두면 수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분리 수거하는 의식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관창고를 지을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오수처리장 가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현재 금년에 준공되는것까지 4개소가 되고, 내년도 미탄 오수처리장이 준공되면 4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동되는 것은 24시간 계속 됩니다.

한달 점검 횟수는 일주일에 2회정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OD제거율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10PPM 이하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하천에 맑은 물이 내려 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창고 설치 문제는 앞으로 미탄에도 소각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매립용과 소각용을 분리 수거를 하다 보면 재활용품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고, 앞으로 소각장이 있는 곳은 재활용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창고를 설치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입니다.

먼저 보광 물고기 문제를 알아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 문제는 2시간 정도 지난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뜨고, 고기를 수거하여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떤 독검물이나 이런것에 대한 중독이 아닌가 생각 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저희들뿐 아니라 원주 환경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물고기를 수거하여 검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또 저희들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평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에도 의뢰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자기들도 일부를 수거하여 검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였는지는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채취한 시간이 너무늦어서 독검물이 발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어떻게 해볼수 없기 때문에 진전을 시킬수가 없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결과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결이 된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아직까지 답은 안나와 있지만 계속 조사중인지, 마무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간이 흘러 가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 의회에 말씀좀 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농약 사용상태를 관리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용평 리조트 경우?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용평 골프장 경우 말입니까?

○ 李慶鎭 委員 : 예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구입한 대장과 사용한 대장, 잔유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골프장에서 저수조에 최종으로 내려 오는 물을 떠서 화학저 BOD, COD 등 농약자유상황 같은 것을 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사회진흥과에 질의한 내용중에 어떤것이 있냐 하면, 지금도 역시 구입량과 사용량을 관리하신다고 하였는데, 어제 자료에 보면 '94년도에

3,400kg을 구입하여 2,700kg을 사용하고 686kg이 남았고,

'95년도에는 2,300kg을 사서 820kg쓰고 1,400kg이 남아있습니다.

이남아 있는 부분들은 사회진흥과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남아 있는 부분을 혹시 하천에 버리는 것인지, 산에 매립을 한 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가능 하시면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사회과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 집단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어떤교육?

○ 李慶鎭 委員 : 허가대상 배출시설업체 경우 업주들 교육을 안하십니까?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연간 단속 목표가 1,100대이고, 단속실적이 907대, 개선 명령이 15대,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 15건은 차종으로 분류를 해서 알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배출가스 단속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게 무쏘, 쉐밀리, 포터 같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경유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휘발유 같은 차량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단속한 차종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유차종만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경유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은 세렉스 같은 경우 몇대가 단속당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 구분은 다시 분류를 해야지 나오지 지금 현재 자료로는 없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영월군에서 1,123대를 점검 했고, 평창군에서는 907대, 정선에는 1,188대, 상당히 평창군의 단속 한 대수로는 상당히 작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영월이 12대, 평창이 15대, 정선이 8대, 이것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영월은 상당히 예방차원에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느낄수 있겠고, 우리는 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하고 적발을 위주로 하는 상당히 많은 건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경유차라고 하면 우리지역의 특히 세렉스 같은 농업용 차량이 많을텐데, 그사람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실적을 위주로 단속하는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예방단속 차원에서 목표를 많이 하고, 단속숫자를 최소화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차중으로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다음기회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방차원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慶鎭 委員 :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수거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

로 통보를 받아서 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군수명의로 통지를 해서 언제까지 청소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볼수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는 이유가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소유자가 바뀌고, 전세든 사람이 바뀌어서 우편료만 낭비했다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청소한 실적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제가 와서 그것을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누락없이 청소를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마는 간혹 그것이 누락이 된다는지,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를 아무리 설치를 하더라

도 그것을 수거해 주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00% 수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위의 여론은 정화조가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막말로 하천으로 직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문제를 하천을 살리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전산관리 체계를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느정도까지는 어느집이 수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그리고 우리지역이 송어장 허가 관리 대상 배수시설 업체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송어장 침전지 청소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침전지 청소는 행정규제 완화로 인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행정규제의 완화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제가 어느 송어장이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침전지 청소를 하는것을 강화 시키질 못할 망정 상당히 완화 시키는 추세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세차장이나, 공장같은 경우는 최종 방류구를 표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慶鎮 委員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송어장 폐수 문제는 침전지를 어떤 송어장은 주민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면 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할 것 같은데, 침전지가 너무 붕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해 주면 주민들이 할 얘기를 안하니까, 사업주가 상당히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종 방류구에 부유물질의 기준을 표시하는 식으로는 못하겠지만 침전지를 개방하여 여러사람이 쉽게 볼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물 종합 대책을 보면 관내 주요 7개 하천을 중심으로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가 평창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지만 말씀

드리면, 앞으로는 모든 업체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1개 업체로 하여 평창에서 보통 40km까지 전체 오염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업도 있고, 표시 안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드려 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창강 같은 경우에 특히 보광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평창군수가 당신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평창강 상류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몇km인데 지금까지 평당이라든가, km당, 버들치가 몇마리 있고, 쏘가리가 몇마리 살고, 하천수질 급수가 몇급이라는 생태계 조사라든가, 환경평가영향서를 사장에게 주고 착공서 부터 준공했을때 그 차이점, 준공한 이후에 계속관리 했을때 그 차이점 그런 문제들을 점검 했을때 당초에 시작했을때 하천에 고기가 몇마리 살았는데, 준공할때 보니 한마리 밖에 없더라 그러면 생태계 파괴되는 양을 숫자로도 파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하천을 관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지금 보광의 공사가 다 끝나면 보광 자체의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주어 자기들이 시행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 할 겁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또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광문제를 떠나서 평창 7개 강을 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창강, 오대천에 삼양에서 예를 들어 착공계를 냈다면, 사장이 왔을때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장 위치는 오대천 상류로 해서 평창강까지 30km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현재 30km안에는 이러 이러한 생태계 조사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나름대로 한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전달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개발해서 준공이 되었을때 피해사례, 피해 정도를 회사측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는 다든가, 보상을 받는 다든가 할때 제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7개 강을 중점적으로 관리 하신다 하니까, 그 7개 강에 생태계며, 환경영향평가를 자체로 어느정도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95년도 말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했을때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2년이나 3년, 4년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왔을때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하든가 해야 하는데,

○ 李慶鎭 委員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慶鎭 委員 : 그럼 '96년도에 어느 사장이 와서 타협을 하는데 이것을 제시했을때, 1년차이니까 좋다,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한다고 했을때, 차이가 3년정도 나기 때문에 옛날것 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지금 염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 李慶鎭 委員 :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95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고, '98년도에 하는것은 3년치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생태계 조사에서 감수율이 있으면 너희들 나름대로 시정을 해라,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합의 문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언제 해도 한번은 기본적으로 생태

계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한번은 중점관리 7개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은 내용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11월 28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

(16時37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金 鍾 永
幹事	劉 燉 文
委員	李 慶 鎮
委員	李 相 薰
委員	李 洙 現
委員	金 斗 經
委員	禹 康 鎬

○ 委員아닌 議員

議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財務課長	權 赫 昇
地籍課長	南 大 鉉
社會課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 敎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4 面に 실음)

#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이수현 위원	답변	평창군수 (사회과장)
회의	제37회 평창군의회(경기회) 행정사무감사 ('95. 11. 28)		
<질의요지> 심야 및 퇴폐. 번태영업 지도단속중 행정처분 7개소와 고발 3개소에 대한 내용			

<답 변>

○ 심야 및 퇴폐. 번태영업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업소 현황

업종별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유흥주점	신사동	김종욱	봉평면 창동2리 384-7	시간외 영업	영업정지 30일
"	대 부	천미경	봉평면 무이리 695-1	시간외 영업	영업정지 60일
"	월드컵	손명희	진부면 하진부리 100-38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영업정지 15일
"	유람선	박기영	진부면 하진부리 122-2	영업자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신고미필	시정지시
일반음식점	산 골	신기승	봉평면 창동2리 382-4	시간외 영업	영업정지 60일
"	경양식 0374	최옥순	진부면 하진부리 100-54	노래연습장기기 설치	영업정지 30일
청소년전자유기장업	금영 오락실	최병순	대화면 대화리 1001-156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유기기구 임의증설	영업정지 15일

○ 심야 및 퇴폐. 번태영업 단속에 따른 고발시설 현황

유형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결과
유흥주점형	화이트돔웨스티발	-	도암면 횡계5리 356-2, 3, 6	무허가 영업	고 발
일반음식점형	-	이금섭	도암면 횡계5리 355-1	"	"
"	뽕죽산장	한동수	도암면 횡계5리	"	"



질의 · 답변서

질문	우광호 위원	답변	평창군수 (환경보호과장)
회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2 차 행정감사특위 ('95. 11. 28)		
<p>&lt; 질의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12개소)</li> </ul>			

< 답 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비 고
삼호건설 (주)	이운규	봉평면 진조리 227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경 고 과태료50만원	(주)해태음료 신축공사
(합)대림 종합건설	임동필	진부면 송정리 2133-1, 2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경 고 과태료50만원	진부농협김치 공장신축공사
삼경종합 건설(주)	한상열	미탄면 창리	세륜시설 관리 부적정	개선명령	경지정리사업
삼성중공 업(주)	경주현	봉평면 무이리 696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미비	개선명령	보광현장
강호건설 (주)	홍현철	평창읍 후명리	살수차운행 부적정	개선명령	후명~원당간 확포장공사
시대종합 건설(주)	김흥남	진부면 간명리 221-1	방진망설치 부적정	개선명령	모대산관광호 텔신축공사
(주)대양	박봉용	평창읍 후명리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경 고 과태료50만원	평창우회도로 공사현장
동화종합 건설(주)	최규동	평창읍 후명리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경 고 과태료50만원	평창우회도로 공사현장
중앙개발 (주)	허태학	봉평면 무이리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경 고 과태료50만원	보광조경공사
삼양진흥 (주)	최장순	용평면 속사리 692-3, 4	야적물질 덮개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고 발)	아스콘제조업
삼강(주)	임기영	봉평면 무이리 991-1	야적물질 덮개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고 발)	레미콘제조업
태백개발 (주)	김수근	진부면 하진부 90-4	야적장덮개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토사석채취업

# 질 문 답 변 서

질 문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 (환경보호과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감사특위 ('95. 11. 28 )		
<p>&lt; 질의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부 ~ 동해간 국도확·포장사업 관련 건설부에 올린 (주민의견수렴 내용) 건의내용.</li> </ul>			

## < 답 변 >

- 주민의견수렴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수렴 및 건의내용 "별첨"

"한사람이 버린폐수 수만명의 생명위협"  
**평 장 군**

우 232 - 800 강원도 평장군 평장읍 하리 210-2 / ☎ (0374)30-2331 / 담당 김 달 하

문서번호 환경 67121 - 1581

시행일자 1995. 11. 3 .

받음 동해시장

참조 환경보호과장

취급		군 수
보존	년	김달하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안	김 달 하	환경관리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협조

제목 진부 - 동해간 국도확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통보\*

1. 환경 68700 - 915('95. 9. 16)호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본군 진부면 - 동해간 국도확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 1 부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부(87명) 2 부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서 4 부  
 4. 환경영향평가서 면장 의견서 2 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부 3부*



**평 장 군 수**

# 진부-동해간국도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한의견

## 평창군의견

### □ 총괄

- 진부-동해간 국도확장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주민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환경변화중 특히 마을단절 토지이용사항등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효과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

### □ 항목별 검토의견

#### ○ 기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표면적 증·감에 따른 기상변화등을 정밀 분석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 지형·지질

본 사업시행은 대부분 기존도로의 확장으로 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을것이나 일부구간은 많은량의 절·성토로 지형변화가 예상됨으로

- 절·성토량을 구체적으로 산출제시하여야 하며 절·성토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근 농경지와 주변하천에 오염도가 증가 할것이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동·식물성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한 대책과 특히 동물들의 이동로 단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이동통로등의 설치계획과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동·식물 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

본 국도확장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와 철거가옥, 농경지와 일부지역간 통행로가 단절될것이므로 농경지및 마을간 입·출입이 단절되는 지역은 주민생활에 추호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대기질

사업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발생을 예측하고 이에따른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특히 작업도로에서의 속도제한 20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속도제한이 가능한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요함)

○ 수 질

절·성토구간의법면과 교량통과구간의 터파기 공사등으로 인하여 탁류가 발생 진부,도암상수도 수원지로 유입 주민 안전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완벽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주민 밀접지역등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 타

-기존도로의 노선변경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파종, 또는 출하시 불편함이 없도록 농로설치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농경지, 철거가옥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사전검토하여 집단 민원발생등이 없도록 사전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대책과 구체적인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편입되는 초지는 사전 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임신축 피해발생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도시구역내에 저축될시 사전 협의및 시설결정을 득하여야 함.

-진부,도암상수도 취수원과 관련 사전 협의검토 하여야 함.

**진부면 주민의견**

별 첨

**진부면장의견**

별 첨

**도암면 주민의견**

별 첨

**도암면장의견**

별 첨

## 평 가 서 초 안 열 람 부

1.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포장사업			
2. 사업장위치		시점 : 명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증점 : 동해시 북명동			
3. 사 업 자		건설교통부			
4. 주관시장(군수)		동해시장			
5. 공 람 장 소		진부면사무소	6. 공람기간		'95. 9. 19 ~ 10. 24 (30일간)
일련 번호	열 람 일	열 람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	95. 9. 28	김종혁	진부면 수량리	33-3333	
2	"	박순호	" 하리	35-1110	
3	"	안원기	" 이리	35-1111	
4	"	김추진	하진부리	35-7809	
5	"	김정익	하진부리	31-1114	
6	"	차현철	상진부리	35-8000	
7	"	장석만	하진부리	35-1628	
8	"	조계진	상진부리	35-7992	
9	"	김정영	상진부리	35-1314	
10	"	김주영	하진부리 131번지	35-1811	
11	"	이공수	송정리	35-0234	
12	"	고광현	송정리	35-1111	
13	"	이래기	송정리	35, 8013	

일련 번호	일 랑 일	연 랑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4	95.9.28	박재익	두빛 2리	35-8267	
15	"	이찬환	차운리	36-1222	
16	"	김영재	동산리	32-143	
17	"	한원길	환동리	35-8371	
18	"	최태희	송월3리	35-8055	
19	"	이복래	상월2리	36-0641	
20	"	김종석	수강리	32-8884	
21	"	박상원	성기리	32-8928	
22	"	손홍수	용산리	22-8983	
23	"	정우진	광전리	33-1508	
24	"	김만재	하진부리	35-1228	
25	"	이성진	회림리	32-9170	
26	"	이내주	하진부리	35-7371	
27	"	김옥래	" 1리	35-7611	
28	"	홍경미	간평 1리	32-6448	
29	"	이상진	" "	32-6424	
30	"	김병희	사민리	35-5028	
31	"	최성년	"	32-7751	



일련 번호	일 랑 일	일 랑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32	95. 9. 28	박 세진	하진부 8리	35-11182	
33	95. 9. 28	김 우권	하진부 하진부 62-1 1/2	35-7704	김우권
34	95. 9. 28	최 한우	하진부 8리	35-2167	최한우
35	95. 9. 28	김 승호	천부면 하진부리 26-3	35-8110	김승호
36	"	최 승우	"	35-7000	<del>최승우</del>
37	"	김 승화	" 26-3 1/2	35-7704	36.
38	95. 9. 28	김 진범	하진부 (6/3)	25-0282	김진범
39	"	최 봉산	하진부리 209 1/1	35-7704	최봉산
40	95. 9. 28	김 승규	하진부 84 14-18	35-2200	김승규
41	95. 9. 28	최 세리	하진부 사니 1번	35-7190	최세리
42	95. 9. 28	박 종현	하진부 6/3	35-7704	박종현
43	95. 9. 28	박 미중	하진부 6리		박미중


## 평 가 서 초 안 열 람 부

1.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포장사업			
2. 사업장위치		시점 : 평장군 진부면 하진부리, 종점 : 동해시 북명동			
3. 사 업 자		건설교통부			
4. 주관시장(군수)		동해시장			
5. 공 랑 장 소		노상면 4구5		6. 공랑기간	'95. 9. 19 ~ 10. 24 (30일간)
일련 번호	열 람 일	열 람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	9. 26	이상호	노상면 하진부리 387-1리63호	35-5107	
2	9. 26	이경남	황계리	36-7415	
3	9. 26	최승우	노상면 황계리	35-3175	
4	"	김홍래	황계리 591-1	35-5523	
5	"	김영희	노상면 황계리 130	35-5717	
6	9. 27	신종태	노상면 황계리 353-2리	35-5864	
7	4	이성기	노상면 하진부리 1리	34-1681	
8	"	이영수	노상면 황계리 9리	320	25
9	"	김영희	황-충동(橋)	35-5320	
10	"	김민근	황계리 353-2리	35-5274	25
11	"	최임능	유천리	32-6434	25
12	"	김수환	황계 10리	35-6063	25
13	"	김수환	황계 9리	35-5075	25

연월일	연월일	연 람 자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14	9. 27	손승업	강원도 강릉시 동강	35-5961	
15	9. 28	조남용	도양면 황해리	35-5302	4/8
16	9. 28	김경배	해미리 15-1/2	35-6126	2/29
17	9. 28	최주연	해미리 1번 357	35-5017	정리
18	9. 28	김종경	유천리 7501	32-6461	정리
19	9. 28	이귀봉	유천리	32-6503	정리
20	9. 28	박은관	해미리 1리	31-5112	1/3
21	9. 28	김종영	도양면 황해리	36-1969	정리
22	9. 28	최부익	도양면 황해리	36-7293	정리
23	9. 28	김영우	유천리 8번	32-6529	정리
24	9. 28	장원표	유천리 6번	32-6451	정리
25	9. 28	최동광	유천리		정리
26	9. 28	황려대	도양면 황해리	31-5109	
27	9. 28	김준기	해미리	32-6500	정리
28	9. 28	이상현	유천리	36-6008	정리
29	9. 29	김진오	용산리	35-8121	정리
30	9. 28	김익운	해미리 188 1/2	35-7009	정리
31	10. 17	최동광	도양면 황해리 14-1번	35-6052	정리

번호	연락처	담당자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32	10. 11	최두영	도암면 하항리 11번	35-5281	최두영
33	10. 11	이상학	도암면 하항리 11번	35-5238	이상학
34	10. 11	홍명준	도암면 "	35-5824	홍명준
35	10. 17	전석주	도암면 유천리 4번	32-6414	(주)
36	10. 17	문제향	도암면 유천리 40번	"	(주)
37	"	박광숙	도암면 유천리 4번	32-6474	박광숙
38	"	권오열	도암면 유천리 3번	32-6560	(주)
39	"	김영진	도암면 유천리 4번	32-6465	김영진
40	10. 23	최영길	" 황계리 612	35-7011	최영길
41	10. 23	장기산	" " 614	35-1323	장기산
42	10. 23	김희하	" 하항리 4	35-0292	김희하
43	10. 23	심상길	도암면 용산리	35-6078	심상길
44	10. 23	김진기	도암면 황계리 41번	35-5528	김진기
					끝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확포장사업		
2. 사업장위치	시점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증점 : 동해시 북명동		
3. 사 업 자	건설교통부		
4. 의견제출자	성 명	진부면 반명회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진부면 하진부리	전화번호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분량이 많을때에는 별지 첨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의견서 별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li> </ul>		
	개 회 여 부 (해당란에표시)	개 회 필 요 성	
	√ ○     ×	로선 결정시 지역주민의견 반영	
<p>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 9 9 5 . 1 0 . 3 0 .</p> <p>제출자. 진부면 반명회</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p>평창군수 귀하</p>			

## 주 민 의 견 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제1안인 상진부, 간평, 유천, 횡계 방면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나

제1안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지방도로인 2차선이 있으므로 차량 채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횡계로 연결이 될 때에는 상진부 인터체인지 보다는 횡계 인터체인지를 연결할 것이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면서 상진부에서 인터체인지를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부면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분산의 측면에서 진부 - 횡계간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는 하나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완공될 경우에는 교통량이 원활해지므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진부, 횡계를 지나 강릉 - 동해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인 면과 교통의 원활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이럴 경우에는 진부 - 동해간 국도를 이용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교통분산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제 2안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됐지만 상진부, 승정, 신기, 봉산방면 노선으로 본지역은 임산물 관리를 하는 임도만 개설되어 있어 각종농산물 운반이 용이치 못하여 지역발전도 낙후한 상태이므로 정선군 북면 구질리로 통과하여 42번 국도와 연결한다면 산악지대인 명창군, 정선군 내륙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진부 - 정선 - 동해간의 구간으로 국도가 개통될 경우에는 진부에서 바로 정선과 동해로 연결이 되어 동해를 가기위해 진부 - 횡계간의 지방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요도 줄어들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해로 갈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진부에서 동해로 가게 되므로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줄어들어 교통분산의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진부면민은 제2안을 원하고 있으며 진부면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진부면 번영회에서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제2안의 노선으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확포장사업		
2. 사업장위치	시점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종점 : 동해시 북평동		
3. 사 업 자	건설교통부		
4. 의견제출자	성명 이 상 호	주민등록번호	주방아- [redacted]
	주소 도양면 차항리 4030	전화번호	35-5901
의 견	<p>•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분량이 많을 때에는 별지 첨부)</p> <p>진부면에서 국도를 따라 저희마을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부락 차항리는 도로양 옆으로 가축이 쉬어해 있는데 도로통과시 짐을 밟이 헐어내야 되는데 짐을 헐고 이루하는 사업은 국가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도로를 차항리 부락 앞 산중턱으로라도 옮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p> <p>• 공정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p>		
	개 회 여 부 (해당란에 표시)	개 회 필 요 성	
	○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정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995. 10. 20

제출자. 이 상 호 (인)

평창군수 귀하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1. 사업명	진부 - 동해간 국도확포장사업		
2. 사업장위치	시점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종점 : 동해시 북명동		
3. 사업자	건설교통부		
4. 의견제출자	성명	최재돈	주민등록번호
	주소	평창군 오양면 황제리의 산1	전화번호
의견	<p>•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문량이 많을때에는 밑지 첨부)                  도로 개설안 진부-황제-대기-영제간의 도로는 필요 개선했어야                  한것이며 특히 개포정동삼거리에서 카랑교동까지 여허교까지 적지                  사유로 인해 예비도로를 채워줘야 하는것이 최선의책이라고 사료됨</p> <p style="text-align: center;">아름</p> <p>1. 영제교동으로 차량상체서 (진부-동해) 차량분산기능                  2. 기존도로 발달로 서면환경 최소채우기 기존도로발달로                  연계개발및 공사용선입로 개설유지                  3. 그밖에 채우 수송관팔로 연로 주민 소득증대로</p> <p>•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p>		
	개회 여부 (해당란에표시)	개 회 필 요 성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9 9 5 .    “    2 .

제출자.    최    재    돈   

평창군수 귀하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확포장사업		
2. 사업상위지	시진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중점 : 평해시 북평동		
3. 사 업 자	건설교통부		
4. 의견제출자	성 명	안 석 충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안관동 2리 6번	전화번호

의 견	<p>○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분량이 많을 때에는 별지 첨부)</p> <p>1. 예산 절감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도합 구간이 타당</p> <p>2. 국 전체의 평균적인 발전률</p> <p>3. 도합을 거치지 않을 경우 대폭경 구간 이용차량의 고통 및 불편 등으로 향후 새로이 도로 개설을 요하게 됨.</p> <p>4. 고려지 시립장등의 많은 기관등이 상시려 있고 전체적인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p> <p>○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p>		
	개 회 여 부 (해당란에 표시)	개 회 필 요 성	
	○	x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995. 11. 2

제출자, 안 석 충 

작성한 후 귀하

# 의 건 서

- 진부 - 동해간 국도 확장포장사업 제1안은 기존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 황계 - 동해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착공상태임으로 기존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진부면민의 반대여론임.
- 제2안은 진부면민들이 찬성하는 노선으로 상진부에서 하진부 시가지를 경유하여 신기봉산 정선군 북면 구절리를 통과하여 임계면 42번국도와 연결되면 산악지대인 평창군, 정선군 내륙지방을 통과하므로써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으므로 진부면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5. 10. 30

진 부 면



# 의 건 서

- 도암면 유천리 지역은 마을안으로 통과하는 지방도 456호선으로 확장사업을 하게되면 도로양측으로 구분되는 주거지역과 농경지와의 단절로 통행과 영농 장비통행이 어려울것으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며 인근가옥과 농경지가 도로에 편입되므로 경지면적의 축소와 가옥의 이전문제등으로 기존영동 고속도로 옆으로 변경신설하였으면 함.
- 차항리지역을 통과시 도로양측에 많은가옥이 약 40호 있어 가옥이전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인근 앞산으로 설계변경하여 신설하였으면하는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있으므로 변경설치하였으면 함.
- 황계리 지역에서는 고속도로인터 체인지에서 황계시내 우회도로를 확장하여 도암면 수하리 수력발전소 댐이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이곳을 통과하여 왕산면 대기리로 통과하면 이곳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있어 좋겠다는 황계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있음.
- 고속도로신설시 동식물의 좌우 왕래 통행이 차단되므로 이의 통행로 신설로 생태계의 보전 이 이루어 져야 하겠음.

1995. 10.

평 장 군 도 암 면



"한사람이 버린폐수 수만명의 생명위협"

평 장 군

우 232 - 800 강원도 평장군 평장을 하리 210-2 / ☎ (0374)30-2331 / 담당 이 용선

문서번호 환경 67120 - 1887

시행일자 1995. 12. 26  
(제 1 안)

발음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도로건설과장

취급		군 수
보존	년	이용선
부군수		
과 장	김동춘	이용선
기안		

제목 공술신청서 제출

1. 도건 58700-956('95. 9. 4)호 및 평장환경 67120-1827('95. 12. 13)호 관련입니다.

2. 진부 - 동해간 국도확장사업에 따른 공술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공술신청서 5부.

2. 건의문 1부. 끝

(제 2 안)

환경 67120 - 1887

발음 받는곳: 참조

제목 공술신청서 접수 통보

진부 - 동해간 국도확장사업에 따른 공술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술신청 접수증 1부. 끝.

평 장 군 수

받는곳 : 진부면 하진부8리 강성무, 도암면 유전1리 김준기, 도암면 유전1리 이흥중,  
도암면 유전1리 김동춘, 도암면 유전2리 장동부


공 술 신 청 서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사 업 자	건설교통부 장관			
공 청 회	일 시	1995. 12. 27	장 소	진부면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장 동 규	주민등록번호	470827- [REDACTED]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우천리 217 (전화번호: 32-6846)		

공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5 년 12 월 19 일

신청인 **장 동 규** (서명 또는 )

청장군수 귀하

(간 인)

(간 인)

접수번호	공 술 신 청 서 접 수 확 인 증			
지 / 호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공청회일시	1995. 12. 27	공청회 장소	진부면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장 동 규	주민등록번호	470827- [REDACTED]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우천리 217 (전화번호: 32-6846)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귀하의 공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5 년 12 월 27 일

평 장 군 수




공 술 신 청 서

사 업 명	진부-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사 업 자	김현과동우정회			
공 정 회	일 시	95. 12. 21	장 소	진부면 연2층회의실
공술신정인	성 명	김동춘	주민등록번호	44122- [redacted]
	주 소	평창군 진부면 유천리86번지 (전화번호: 32-6455)		

공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군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5 년 12 월 19 일

신청인 김 동 춘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간 인)

(간 인)

접수번호	공 술 신 청 서 접 수 확 인 증			
제 2 호				
사 업 명	진부-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공정회일시	95. 12. 21 일	공정회 장소	진부면 연2층회의실	
공술신정인	성 명	김동춘	주민등록번호	44122- [redacted]
	주 소	평창군 진부면 유천리86번지 (전화번호: 32-645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귀하의 공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5 년 12 월 21 일

평 창 군 장 관



공 술 신 청 서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사 업 자	김원수공학사			
공정 회	일 시	1995. 12. 27	장 소	진부면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주인등록번호	400703- [redacted]
	주 소	평昌郡 道岩面 榆川-里 (전화번호: 32-6443)		

공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5 년 12 월 19 일

신청인 **李 興 鍾** (서명 또는 날인)

병장근수 귀하

(간 인)

(간 인)

접수번호	공 술 신 청 서 접 수 확 인 증			
제 3 호				
사 업 명	진부 - 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공정 회	일 시	1995. 12. 27 15:00	공정 회 장 소	진부면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주인등록번호	400703- [redacted]
	주 소	평昌郡 道岩面 榆川-里 (전화번호: 32-6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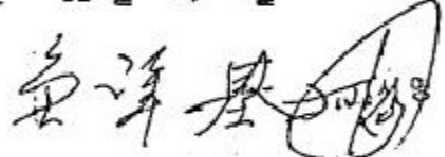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귀하의 공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5 년 12 월 21 일

관 장 인




# 공 술 신 청 서

사 업 명	전부-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사 업 자	진술교동우회			
공 정 회	일 시	1995. 12. 27	장 소	진부연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김영진	주민등록번호	220908- [redacted]
	주 소	평창군 도암면유천리 (전화번호 32-6504)		
공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문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p>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1995 년 12 월 19 일</p> <p>신청인  또는 날인)</p> <p>평창군수 귀하</p>				

(간 인)

(간 인)

접수번호	공술신청서 접수 확인증			
제 4 호				
사 업 명	전부-동해간 국도 확장사업			
공정회일시	'95. 12. 27. 14:00	공정회 장소	진부연사무소	
공술신청인	성 명	김영진	주민등록번호	220908- [redacted]
	주 소	평창군 도암면유천리 (전화번호 32-6504)		
<p>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귀하의 공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5 년 12 월 21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평 장 관 </p>				



## 공설요약

1. 주 소 : 평창군 도암면 유천 1리  
성 명 : 김 준 기  
내 용 : 진부 - 동해간 산업고속도로신설중 진부인터체인지에서 도암면 유천리 마을중심부를 원도로를 확장한다고하는데 이를 새로이신설하지 말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도암면 횡거리에서 인터체인지를 신설 태백으로 인접 시킬계획은 없는지에대한 질문.
2. 주 소 : 평창군 도암면 유천 1리  
성 명 : 이 흥 중  
내 용 : 도로신설 계획이 마을중심부를 통과하는 기존국도를 확장건설한다고하는데 이도로를 확장하므로써 주민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큰집에 대한 해결방안.
3. 주 소 : 평창군 도암면 유천 1 리  
성 명 : 김 동 춘  
내 용 : 국가정책계획에의거 도로가 신설된경우 마을앞 하천변으로 선개 민경허이 신설 주민들에게 영농상 불편이 없도록 신설요방에대한 질문.
4. 주 소 : 평창군 도암면 유천 2 리  
성 명 : 장 동 규  
내 용 : 새로이 신설되는 산업 고속도로가 유천리 마을 통과하면서 이지역 어진상 마을이 집단화 되지않고 길게 동서로 도로양측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연부락별로 진입할수있는 도로는 어떻게 선개되어있으며 야생동물이 남북으로 통과시 통과할수있는 대체은 어떤것인지 질문.

# 건의서

전부 - 동해간 국도확장사업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시  
지역주민들의 다수의견이 당공사 설계팀의 일원이 참석하여 설명을 할수  
있도록 요망하오니 설계팀이 필히 참석설명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건의 합니다.

1995. 12. 19.

도                      암                      면



평창군수 귀하

# 공 술 신 청 서

사 업 명	천주-용례간 주민환경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사 업 사	건설 5호부 호호				
공 정 회	일 시	95. 12. 27	장 소	천주연사우도 이리리실	
공술신청인	성 명	강 승 무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강군 천주연 천주리 (전화번호: 35-73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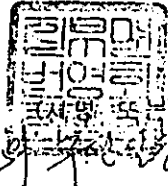
공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5 년 12 월 27 일

평강군수 귀하

천주연 주민환경사업 신청인 강 승 무



----- (간 인) ----- (간 인) -----

접수번호	공술신청서 접수 확인증				
제 호	5				
사 업 명	천주-용례간 주민환경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공정회일시	95. 12. 27	공정회 장소	천주연사우도 이리리실		
공술신청인	성 명	강 승 무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강군 천주연 천주리 (전화번호: 35-73 0000)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귀하의 공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5 년 12 월 27 일

평 강 군



## 공술 규정 내용

1. 조선전쟁 전후 용산 구설 인계양면
2. 토지 전권면적 주권 신가계약 이묘보상
3. 2차 토지 전부 위권, 형제, 양면, 전권이유